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하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주택전시관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AM10:00 ~ PM14:00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관련기관 및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2층 12개동 총 999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10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104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범위)
■ 특별공급 청약시기 : 2023년 05월 02일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59.8090A	59A	59.8090	21.4387	81.2477	38.1796	119.4273	32.8469	105
	59.9257B	59B	59.9257	22.7096	82.6353	38.2544	120.8897	32.9111	21
	59.9774C	59C	59.9774	21.2072	81.1846	38.2877	119.4723	32.9395	3
	74.9589	74	74.9589	26.0726	101.0315	47.8510	148.8825	41.1674	152
	84.9954A	84A	84.9954	29.3869	114.3823	54.2581	168.6404	46.6795	461
	84.8903B	84B	84.8903	29.1463	114.0366	54.1906	168.2272	46.6217	97
	84.6756C	84C	84.6756	29.5174	114.1930	54.0537	168.2467	46.5038	135
	84.7796D	84D	84.7796	29.1687	113.9483	54.1200	168.0683	46.5610	21
	84.8945E	84E	84.8945	28.7940	113.6885	54.1935	167.8820	46.6240	2
	84.8148F	84F	84.8148	29.0257	113.8405	54.1426	167.9831	46.5802	2
	합 계								999

2) 기관별 공급세대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 )는 예비추천세대임

구 분			59A	59B	59C	74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15)	-	-	3(5)	9(45)	2(10)	3(15)	1(5)	-	-	21(105)
	장기복무 제대군인		2(10)	1(5)	-	4(20)	9(45)	2(10)	3(15)	1(5)	-	-	22(1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1(5)	-	3(15)	10(50)	2(10)	2(10)	1(5)	-	-	21(105)
	중소기업 근로자		2(10)	1(5)	-	3(15)	9(45)	2(10)	3(15)	-	-	-	20(100)
	장애인	경기도	1(5)	-	-	1(5)	6(30)	1(5)	1(5)	-	-	-	10(50)
		서울특별시	-	-	-	1(5)	2(10)	1(5)	1(5)	-	-	-	5(25)
		인천광역시	1(5)	-	-	1(5)	2(10)	-	1(5)	-	-	-	5(25)
합 계			11(55)	3(15)	-	16(70)	47(235)	10(50)	14(70)	3(15)	-	-	104(520)

II 공급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0.(목)		주택전시관, e편한세상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주택전시관 개관	2023.04.21.(금)		주택전시관 :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3.05.02.(화) 09:00~17:30	청약홈 홈페이지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2023.05.02 (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05.11.(목)		청약홈 홈페이지
계약 기간	2023.05.22.(월) ~ 2023.05.24.(수)		주택전시관 :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 (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10:00 ~ 14:00) 가능합니다.
단, 주택전시관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III 신청 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본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 저축구비 여부

구 분	내 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 단, 입주자 저축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로 청약 불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Ⅳ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V 유의사항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VI 현장접수처 위치

■ 현장접수처 위치 :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901
■ 홈페이지 : www.elife.co.kr
■ 대표번호 : 1533-3442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한국자산신탁㈜	디엘이앤씨㈜	㈜엠디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7736808	110111-1537385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광역도

※ 상기 광역도의 일러스트(그림)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 상의 개발 및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전시관 찾아오시는 길